

대전지방법원 2020. 5. 28 선고 2019나11153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남로

담당변호사 이민혜

피고, 항소인 C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우

변론 종결 2020. 4. 23.

판결 선고 2020. 5. 28.

제 1 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 6. 26. 선고 2019가단100963 판결

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1/2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 3. 30. 접수 제2390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의 나.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 외에 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1) 제1심판결 제3면 제12행의 "소유권이전등기" 뒤에 "(이하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추가한다.

2) 제1심판결 제3면 제13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다. 관련 민사 사건의 경과

1) 원고들은 2017.경 G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가합2243호로, G이 D의 E에 대한 이 사건 매수대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채무를 승계하였음을 이유로 E에 대한 채권자로서 G에게 위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등을 포함한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제1심 법원은 2017. 8.

9. 원고들의 위 부당

이득반환청구를 포함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대전고등법원 2017나13609호로 항소를 제기한 원고들은 항소심에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원고들이 E의 채권자로서 E이 D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매수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D이 G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순차 대위하여 위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는 청구로 교환적 변경을 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18. 9. 12. 원고들이 교환적으로 변경한 위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원고들의 다른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G은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8다272445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19. 1. 17.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따라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또한 원고들은, 2018.경 D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8가합100032호로 원고들이 E의 채권자로서 E이 D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매수대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8. 4. 25. 무변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하여 D이 대전고등법원 2018나14609호로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18. 12. 28. 제1심판결의 절차에 선고기일통지서송달 절차가 흠결되었음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되, 원고들의 D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대위행사를 일부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한편 D은 항소심에서 E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매수대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주장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의 채무승인을 이유로 한 시효중단 재항변을 받아들여 D의 위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였다. D은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9다206193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19. 5. 10.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따라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제1심판결 제5면 제11행부터 제15행까지 부분을, "D이 E으로부터 이 사건 매수대금을 제공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은 2001. 3. 19.경으로부터 10년의 기간이 도과한 2018.경에서야 원고들이 E을 대위하여 D에 대하여 이 사건 매수대금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이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라 한다)를 제기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로 고친다.

4) 제1심판결 제7면 제18행의 "가진다" 뒤에, "(한편 피대위채권의 존부와 관련하여 피고는, 'E이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들이 대위하여 행사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순차 대위하여 행사하는 채권은 D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으로, E이 D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바,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를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매경, 판사 김혜령, 판사 박성수

별지

목 록

1. 천안시 동남구 대 248㎡

2.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대중음식점 및 사무실

1층 대중음식점 128.04㎡

2층 대중음식점 149.88㎡

3층 사무실 63.805㎡

지층 대중음식점 148.78㎡, 끝.